

2017년 제10회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(총괄)

□ 제1호 안건

심의일자	2017. 12. 19.(화)	심의내용	건축심의
안 건 명	건축허가 제한(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주변지역)		
신청위치	8개 구역 1,035km ²		
심의결과	원안 의결		

◆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 인·허가 시 관계법령 및 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

【원안 동의 조건내용】

○ 해당사항 없음

-이하여백-

□ 제2호 안건

심의일자	2017. 12. 19.(화)	심의내용	건축심의, 교통심의
안 건 명	서구 루원시티 주상1,2블록 주상복합 신축		
신청위치	서구 루원시티 도시개발구역 주상1,2블록		
심의결과	건축 및 교통분야: 재검토 의결		

◆ 아래 지적사항을 검토·반영하시어 심의 신청이 가능하며 이행여부는 인·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◆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 인·허가 시 관계법령 및 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

【재검토 의견 내용】

- 106동,107동,108동은 근린생활시설로 인한 소방활동이 어려우니 각 세대로 소방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재검토할 것.
- 105동,110동,111동은 단차이로 인한 소방활동이 어려우니 각 세대로 소방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재검토할 것.
- 구조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상세 굴토계획을 수립할 것.

《기타 의견》

- 1층 동 출입구 동선은 가급적 직선화하고 외진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.
- 1층 동 출입구에 캐노피 설치바람(낙하물 사고방지).
- 오피스텔 직통계단(#3) 위치를 변경하여 복도 내 채광을 확보할 것.
- 공동주택 통학차량 회차공간의 진출입부는 주차장 이용차량과의 상충을 완화하고, 학원차량의 제원을 고려해서 원활한 동선이 확보되도록 개선.
- 서측 비주거 주차장 램프전면, 주요 분기부에는 PIS 보완 설치.
- 공동주택 동측 출입구는 교차로운영안에 대하여 재검토 바람(권장).
- 비주거 서측램프 지하진출부는 주차면 재배치 등을 통해 차량동선 체계를 개선할 것.

《공통사항》

- 기타의견과 사전검토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및 기관(부서)별 협의 의견은 심의 신청 시 검토·반영하시기 바랍니다.

□ 제3호 안건

심의일자	2017. 12. 19.(화)	심의내용	건축심의, 교통심의
안 건 명	부평구 부평동 374-17일원 오피스텔 신축		
신청위치	부평구 부평동 374-17 외 6필지		
심의결과	건축 및 교통분야: 조건부 의결		

- ◆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동의하며 이행여부는 인·허가권자가 검토·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◆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 인·허가 시 관계법령 및 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

【조건부 의결 내용】

《건축분야》

- 기준층 중앙복도(X5~X9열)의 자연환기 및 채광 방안을 강구할 것.
- 27층 67Type 평면 테라스의 유지관리 대책(단열, 우수처리 등)을 수립할 것.
- 8미터 도로변의 보행자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(어린이 통학로 확보).
- 사업부지 위치로 완충차로 설치 바람.

《교통분야》

- 부흥로 286번길의 경우 보차분리가 가능하도록 일방통행(부흥로에서 진입) 안을 검토하여 적극 반영할 것(권장).
- 차량출입구 횡단보도는 고원식으로 설치할 것.
- 기계식주차장 이용차량과 통로 통과차량간의 상충을 최소화 하도록 시설 추가확보 검토(회전장치, PIS 보완 등)할 것.
- 차량 진출입부 정지선은 삭제하고, 전 구간 중앙선을 파선으로 철폐할 것.
- 부흥로 286번길 및 부흥로 294번길의 차로폭을 3.4m에서 3.0m로 축소하고, 사업지 맞은편쪽으로 충분한 측방여유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횡단구성을 조정할 것.

《공통사항》

- 기타 사전검토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및 기관(부서)별 협의 의견은 건축 인·허가(사업계획 승인) 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.

□ 제4호 안건

심의일자	2017. 12. 19.(화)	심의내용	건축심의, 교통심의
안 건 명	남구 용현학익7블록(A-1) 주택건설사업		
신청위치	남구 용현학익7블록도시개발사업지구 A-1		
심의결과	건축 및 교통분야: 조건부 의결		

- ◆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동의하며 이행여부는 인·허가권자가 검토·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◆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 인·허가 시 관계법령 및 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

【조건부 의결 내용】

《건축분야》

- 동 출입구에 캐노피를 설치하여 보행자 위해요소 방지대책을 강구할 것.
- 방음벽은 가로경관을 최대한 고려하여 설치할 것.

《교통분야》

- 지하1~2층 층간 이동 램프는 직선화할 것.
- 사업지 동측도로와 매소홀로 접속부 도류화 처리할 것.
- 사업지 동측 근생주차장은 좌회전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할 것.
- 주변 교차로 신호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.
- 지하주차장 일방구간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할 것.
- 주차장 진출 후 우회전 차량과 드롭(통학)차량 좌회전 차량간 상충으로 인한 안전을 확보할 것.

《공통사항》

- 기타 사전검토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및 기관(부서)별 협의 의견은 건축 인·허가(사업계획 승인) 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.

□ 제5호 안건

심의일자	2017. 12. 19.(화)	심의내용	건축심의, 교통심의
안 건 명	중구 신흥동2가 54-8 생활숙박시설 신축		
신청위치	중구 신흥동2가 54-8		
심의결과	건축 및 교통분야: 조건부 의결		

- ◆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동의하며 이행여부는 인·허가권자가 검토·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◆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 인·허가 시 관계법령 및 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

【조건부 의결 내용】

《건축분야》

- 사업지 북측 기존 주거시설(삼익아파트 등)에 미치는 일조영향을 검토할 것.
- 상세굴토계획을 수립할 것(계획서는 허가 전 장경수 위원의 확인을 요함).

《교통분야》

- 지상과 지하주차장으로 구분되고 지하6층까지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으니 PIS(주차가능 알람램프, 잔여표시기 등) 설치를 적극 반영하고 도면에 표기할 것.
- 출입구부 차량 진출로는 1개 차로로 축소하여 계획할 것.
- 지상1층 주차장 진출입부의 진출 2개 차로는 1개 차로로 줄이고 주차장 진입측 회전반경을 최대한 확보할 것.

《공통사항》

- 기타 사전검토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및 기관(부서)별 협의 의견은 건축 인·허가(사업계획 승인) 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.

□ 제6호 안건

심의일자	2017. 12. 19.(화)	심의내용	건축심의
안 건 명	부평구 삼산부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		
신청위치	부평구 삼산동 74-2 외 6필지		
심의결과	건축분야: 조건부 의결		

- ◆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동의하며 이행여부는 인·허가권자가 검토·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◆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 인·허가 시 관계법령 및 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

【조건부 의결 내용】

《건축분야》

- 어린이놀이터와 15M 도로 사이에 식재 등을 추가하여 어린이 안전을 위한 버퍼존(buffer zone)을 확보할 것.

《공통사항》

- 기타 사전검토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및 기관(부서)별 협의 의견은 건축 인·허가(사업계획 승인) 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.

-이하여백-

□ 제7호 안건

심의일자	2017. 12. 19.(화)	심의내용	건축심의
안 건 명	남구 용현동 573-7 생활숙박시설 신축		
신청위치	남구 용현동 573-7 외 1필지		
심의결과	건축분야: 조건부 의결		

- ◆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동의하며 이행여부는 인·허가권자가 검토·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◆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 인·허가 시 관계법령 및 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

【조건부 의결 내용】

《건축분야》

- 사업지 주변에 미치는 교통영향을 검토하여 객실 규모에 적정한 주차 확보 계획을 마련할 것.

《공통사항》

- 기타 사전검토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및 기관(부서)별 협의 의견은 건축 인·허가(사업계획 승인) 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.

-이하여백-